

「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·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3개 통 증설에 따른 통장 3명 증원(안 별표)
 - 당초 : 704개 통·리장(통장 493, 리장 211)
 - 변경 : 707개 통·리장(통장 496, 리장 211)
- 조정내역

읍면동	현행 정원	조정 정원	증감사항
양포동	56	59	증3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통리반 증감에 따른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의 후속 조치로 양포동의 3개 통 증설에 따른 통장 3명의 증원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시민들의 혼란 여지를 없애고 최일선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됨.